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신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따라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신청이 있어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동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7일
한국방재협회장

1. 신청인

법인명	(주)파일웍스 (대표 백규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41111-*****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 16 (태평동) 태평빌딩 202호
법인명	디엘건설(주) (대표 박유신)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10111-*****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 (구월동)
법인명	(주)한화 (대표 김승모)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10111-*****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장교동)
법인명	계룡건설산업(주) (대표 윤길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60111-*****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 (탄방동)

2. 기술명 : 수평 및 상하교반 장치를 이용해 전 길이 강도가 균일한 테이퍼 형 개량체를 지중에 형성하는 연약지반 개량공법

3. 기술내용(요약)

- 신청기술은 지반 액상화로 인한 구조물의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선단으로 갈수록 길이가 일정 비율로 짧아지는 다수의 교반날개와 굴착공의 최소 직경과 같거나 작은 직경을 갖는 연속스크류가 결합된 천공교반장치로 지반을 천공하면서 그 선단으로 액상의 고화재를 분사해서 굴착토사와 액상의 고화재를 교반날개로 수평교반하고 연속스크류로 상하교반하여 전 길이에 걸쳐 강도가 균일한 테이퍼 형상의 개량체를 지중에 형성하는 연약지반 개량공법이다.

4. 기술범위

- 선단으로 갈수록 길이가 짧아지는 다수의 교반날개와 굴착공의 최소 직경과 같거나 작은 직경을 갖는 연속스크류가 회전축에 결합된 천공교반장치로 지반을 천공할 때 천공교반장치의 선단에서 분사되는 액상의 고화재와 원지반 굴착토사를 교반날개와 연속스크류를 이용해서 수평교반과 상하교반함으로써 전 길이에 걸쳐 강도가 균일한 테이퍼 형상의 개량체를 지중에 형성하여 연약 사질토 지반의 액상화와 그로 인한 구조물의 불안정을 억제하는 저하중 구조물용 연약지반 개량공법

5.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한 사항은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방재협회(02-6952-93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 가. 이해관계인 의견서(세부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나. 이해관계인 서약서(세부운영규정 별지 제2호의 붙임1 서식)
- 다. 신청서 열람 요청서(세부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라. '가'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 자료

7. 제출처 : 한국방재협회 연구기술실(02-6952-9388)

※ 이해관계인 의견 반려 사항

「재난안전기술평가 세부운영규정」 제14조 제2항 및 3항에 의거,

-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 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 인정되지 않음.
- 이해관계인의 기술이 타인의 기술로써 직접 당사자가 아닌 경우
- 기술 도용 등 산업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 요청한 경우
- 이해관계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